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2
----------	------

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김은영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스토킹과 그에 따라 이어지는 후속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스토킹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군수 및 사용자·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예산의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제1항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3.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
2.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프로그램 제공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4. 피해자를 위한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제공
5.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6.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자료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스토킹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17. 제정 2023.7.1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톱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톱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톱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톱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7.11. 제정, 2023.7.18. 시행)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

입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7.11.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